

긴급 보조금 (Emergency Assistance)

긴급 보조금은 긴급한 가족 관련 사안, 자택에서의 관찰 간호 또는 연금국 혜택이나 기타 보장 범위에서 벗어난 긴급 또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당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일회성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액은 필요에 따라 다르며 신청 건수 당 수백 달러에서 \$5,000 까지입니다.

긴급 보조금

긴급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노회와 대회, 고용주 또는 미국 장로교 기관이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을 연금국과 공동부담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회와 노회 요청을 받아 보조금 지급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연금국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자의 재정적 및 개인적 필요 사항과 재원을 심사합니다.

금액

필요 사항에 따라 보조금 범위는 신청 건수 당 수백 달러에서 \$5,000 사이입니다. 개인은 12 개월 동안 최고 \$15,000 까지 긴급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대상

자격 대상이 되려면 긴급 또는 예기치 못한 재정적 필요 사항이 있어야 하며

- 교단 교회, 노회와 대회, 기관 또는 제휴 단체에서 고용되어 있고 의료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는,
- 연금국 은퇴 연금 또는 생존자 연금 수령자이어야 합니다.

고려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주의 지급 채무 (직원 사례비 지급)
- 사임 직원에 대한 노회 또는 고용주의 퇴직 수당 (퇴직금 지급)
- 실업 수당 또는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타 프로그램 대체 지급
- 개인의 선택으로 65 세 이전 은퇴 또는 사회보장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을 돕는 경우
- 신청자에게 대출
- 심각하고 장기적인 질환, 장애 또는 이혼 등 특정한 사례를 제외한 이사 비용 제공
- 법률 비용, 벌금, 과태료 또는 세금 (SECA 또는 FICA 수당 포함) 지급
- 연금국 부담금 지급.

신청 방법

개인 보조금

긴급 보조금 자격 대상이라고 생각되면 평신도 직원은 고용주에게 문의하시고, 교단 목사는 노회 또는 대회에 문의하십시오.



긴급 보조금 (Emergency Assistance)

고용주 또는 노회와 대회는 작성된 [긴급 보조금 신청서](#)와 요청한 총 보조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필요 및 사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문서와 함께 연금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 memberservices@pensions.org).

고용주, 노회 또는 대회는 일반적으로 신청한 보조금을 동등하게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공동 부담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금국은 보조금을 신청한 고용주, 노회 또는 대회와 보조금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동 부담을 할 수 없는 재정적 실태도 확인합니다.

단체 보조금/자연재해

자연재해로 인해 보조금이 필요한 경우는 고용주, 노회 또는 대회에 문의해 주십시오. 피해를 입은 직원 수를 연금국 대회 [관계 관리자](#) 또는 [교회 컨설턴트](#)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연금국은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검토하여 긴급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단체 보조금은 보조금 분배를 책임지는 미국 장로교 고용주에게만 제공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연금국 800-773-7752 (800-PRESPLAN) 로 문의하십시오.

